

**제1장**  
**최초규정 및 일반정의**

**제1절**  
**최초규정**

**제1.1조**  
**자유무역지대의 창설**

당사국들은 1994년도 GATT 제24조 및 GATS 제5조에 합치되게 자유무역지대를 창설한다.

**제1.2조**  
**목적**

이 협정은 다음을 목적으로 한다.

- 가. 당사국들 간 무역의 확대 및 다양화 장려
- 나. 당사국들의 영역 간 상품 및 서비스의 무역 장벽 제거 및 국경 간 이동 촉진
- 다. 자유무역지대에서 공정한 경쟁 조건 증진
- 라. 당사국들의 영역 내에서 투자 기회를 실질적으로 증대
- 마. 각 당사국의 영역 내에서 지식재산권에 대한 충분하고 효과적인 보호 및 집행 제공
- 바. 이 협정의 이행과 적용, 이 협정의 공동 운영 및 분쟁 해결을 위한 효과적 절차 마련, 그리고
- 사. 이 협정의 이익 확대 및 증진을 위하여 양자, 지역 및 다자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기틀 마련

**제1.3조**  
**다른 협정과의 관계**

1. 당사국들은 세계무역기구협정 및 그 당사국들이 당사자인 그 밖의 협정상의 서로에 대한 자국의 기존의 권리 및 의무를 확인한다.
2.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이 협정은 상품, 서비스, 투자 또는 인에 대하여 이 협정에 규정된 것보다 더 유리한 대우를 규정한 당사국들 간의 어떠한 국제법적 의무로

부터도 이탈 또는 무효화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3. 이 협정에 달리 규정되지 아니하는 한, 이 협정과 양 당사국이 당사자인 그 밖의 협정 간 불일치가 있는 경우, 당사국들은 상호 만족할 만한 해결책을 찾기 위하여 서로 협의할 수 있다.

### 제1.4조 의무의 범위

이 협정에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각 당사국은 자국 영역 내에서 모든 수준의 정부가 이 협정상의 의무 및 약속을 준수하고 이행하도록 보장한다.

### 제1.5조 적용범위

달리 규정되지 아니하는 한, 이 협정의 규정은 한국과 코스타리카,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니카라과 및 파나마 간에 개별적으로 간주되어 적용된다. 이 협정은 코스타리카,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니카라과 및 파나마 간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 제2절 일반적 정의

#### 제1.6조 정의

이 협정의 목적상, 달리 명시되지 아니하는 한,

**반덤핑 협정**이란 세계무역기구협정 부속서 1가에 포함된 「1994년도 GATT 제6조의 이행에 관한 협정」을 말한다.

**적용대상투자**란 한쪽 당사국에 대하여, 이 협정의 발효일에 존재하거나 그 이후 설립, 인수 또는 확장된 그 당사국 영역 내에서의 다른 쪽 당사국 투자자의 투자로서, 제9.29조(정의)에서 정의된 것을 말한다.

**관세**는 모든 관세 또는 다른 쪽 당사국 상품의 수입에 부과되거나 이와 관련하여 부과되는 모든 형태의 추가세 또는 추가금을 포함하여 그러한 수입에 부과되거나 이와 관련하여 부과되는 모든 종류의 부과금을 포함하나, 다음의 어떠한 것도 포함하지 아니한다.

가. 1994년도 GATT 제3조제2항 또는 양 당사국이 당사자인 후속 협정의 상응하는 규정에 합치되게 부과되는 내국세에 상당하는 부과금

나. 당사국의 법에 따라 그리고 제7장(무역구제)에 합치되게 적용되는 반덤

평, 상계 또는 긴급수입제한 관세

- 다. 제공된 서비스의 비용에 상응하는 것으로서 수입과 관련된 수수료 또는 그 밖의 부과금, 또는
- 라. 세계무역기구협정 부속서 1가에 포함된 「농업에 관한 협정」 상 행해진 모든 농업 긴급수입제한조치에 따라 부과되는 관세

**관세평가협정**이란 세계무역기구협정 부속서 1가에 포함된 「1994년도 GATT 제7조의 이행에 관한 협정」을 말한다.

**일**이란 달력상의 일을 말한다.

**기업**이란 회사, 신탁, 파트너십, 단독소유기업, 합작투자 또는 그 밖의 협회를 포함하여, 영리목적인지 여부와 민간이나 정부가 소유하거나 지배하고 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적용 가능한 법에 따라 구성되거나 조직된 모든 실체를 말한다.

**당사국의 기업**이란 당사국의 법에 따라 구성되거나 조직된 기업을 말한다.

**기존**이란 이 협정의 발효일에 유효한 것을 말한다.

**자유사용가능통화**란 국제통화기금이 그 협정에 따라 결정한 “자유사용가능통화”를 말한다.

**GATS**란 세계무역기구협정 부속서 1나에 포함된 세계무역기구 「서비스무역에 관한 일반협정」을 말한다.

**1994년도 GATT**란 세계무역기구협정 부속서 1가에 포함된 세계무역기구 「1994년도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을 말한다.

**당사국의 상품**이란 1994년도 GATT에서 양해되는 것과 같은 국내 상품 또는 당사국이 합의할 수 있는 그러한 상품을 말하며, 그 당사국의 원산지 상품을 포함한다.

**정부조달**이란 정부의 목적을 위하여 정부가 상품이나 서비스 또는 양자의 결합을 획득하거나 그 사용을 확보하는 과정을 말하고, 상업적 판매 또는 재판매를 위한 것이거나 상업적 판매 또는 재판매를 위한 상품 또는 서비스의 생산이나 공급에 사용하기 위한 것이 아니어야 한다.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HS)**란 당사국들이 각국의 관세법에서 채택하여 시행하는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와 그 일반해석규칙, 부의 주, 그리고 류의 주를 말한다.

**수입허가협정**이란 세계무역기구협정 부속서 1가에 포함된 「수입허가절차에 관한 협정」을 말한다.

**공동위원회**란 제21.1조(공동위원회)에 따라 설치된 공동위원회를 말한다.

**지방정부**란 다음을 말한다.

가. 한국의 경우, 「지방자치법」에 정의된 지방정부, 그리고

나. 중미 공화국들의 경우, 지방자치당국

조치는 모든 법, 규정, 절차, 요건 또는 관행을 포함한다.

**최혜국**이란 최혜국(Most-Favored-Nation)을 말한다.

**국민**이란 부속서 1-가에 따라 당사국의 국적을 보유하고 있는 자연인을 말한다.

**원산지**란 제3장(원산지 규정 및 원산지 절차)에 규정된 원산지 규정상의 요건을 충족하는 것을 말한다.

**당사국들**이란 한쪽 당사국인 코스타리카,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니카라과 및 파나마 공화국(이하 “중미 공화국들”이라 한다)과 다른 쪽 당사국인 대한민국을 말한다.

**당사국**<sup>1,2</sup>이란 이 협정이 효력이 있는 모든 국가를 말한다.

**인**이란 자연인 또는 기업을 말한다.

**당사국의 인**이란 당사국의 국민 또는 기업을 말한다.

**특혜관세대우**란 원산지 상품에 대하여 이 협정에 따라 적용 가능한 관세율을 말한다.

**보조금 및 상계조치에 관한 협정**이란 세계무역기구협정 부속서 1가에 포함된 「보조금 및 상계조치에 관한 협정」을 말한다.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의 적용에 관한 협정**이란 세계무역기구협정 부속서 1가에 포함된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의 적용에 관한 협정」을 말한다.

**공기업**이란 당사국이 소유하거나 소유지분을 통하여 지배하는 기업을 말한다.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에 관한 협정**이란 세계무역기구협정 부속서 1가에 포함된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에 관한 협정」을 말한다.

**영역**이란 당사국에게 부속서 1-가에 규정된 그 당사국의 영역을 말한다.

**무역관련 지식재산권에 관한 협정**이란 세계무역기구협정 부속서 1다에 포함된 「무역관련 지식재산권에 관한 협정」을 말한다.

**세계무역기구**란 세계무역기구(World Trade Organization)를 말한다. 그리고

<sup>1</sup>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다른 쪽 당사국”이란, 이 협정에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한국의 경우, 중미 공화국들 중 하나, 그리고 중미 공화국들의 경우, 한국을 말한다.

<sup>2</sup>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비당사국”이란 협정이 적용되는 한국과 각 중미 공화국을 제외한 모든 국가를 말한다.

세계무역기구협정이란 1994년 4월 15일에 채택된 「세계무역기구 설립을 위한 마라케쉬 협정」을 말한다.

## 부속서 1-가 국가별 정의

이 협정의 목적상, 달리 명시되지 아니하는 한,

당사국의 국적을 보유하고 있는 자연인이란 다음을 말한다.

- 가. 한국에 대하여, 「국적법」 상 의미에서 한국의 국민
- 나. 코스타리카에 대하여, 코스타리카 공화국의 정치 헌법(Constitución Política de la República de Costa Rica) 제13조 및 제14조에 정의된 코스타리카인(costarricense)
- 다. 엘살바도르에 대하여, 엘살바도르 공화국의 헌법(Constitución de la República de El Salvador) 제90조 및 제92조에 정의된 엘살바도르인(salvadoreño)
- 라. 온두라스에 대하여, 온두라스 공화국의 헌법(Constitución Política de la República de Honduras) 제23조 및 제24조에 정의된 온두라스인(hondureño)
- 마. 니카라과에 대하여, 니카라과 공화국의 정치 헌법(Constitución Política de la República de Nicaragua) 제15조에 정의된 니카라과인(nicaragüense), 그리고
- 바. 파나마에 대하여, 파나마 공화국의 정치 헌법(Constitución Política de la República de Panamá) 제9조, 제10조 및 제11조에 정의된 파나마인(panameño)

영역이란 다음을 말한다.

- 가. 한국에 대하여, 한국이 주권을 행사하는 육지, 해양 및 상공, 그리고 한국이 국제법과 자국법에 따라 주권적 권리 또는 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는 영해의 외측한계에 인접하고 그 한계 밖에 있는 해저 및 하부토양을 포함한 해양지역
- 나. 코스타리카에 대하여, 자국의 국내 법규와 국제법에 따라 코스타리카 공화국의 영역
- 다. 엘살바도르에 대하여, 자국 주권하의 육지, 해양 및 상공, 그리고 자국이 국제법과 그 국내법에 따라 주권적 권리 및 관할권을 행사하는 배타적 경제수역 및 대륙붕
- 라. 온두라스에 대하여, 자국 주권하의 육지, 해양 및 상공, 그리고 자국이 국제법과 그 국내법에 따라 주권적 권리 및 관할권을 행사하는 배타적 경제수역 및 대륙붕

- 마. 니카라과에 대하여, 자국의 국내 법규와 국제법에 따라 니카라과 공화국의 영역, 그리고
- 바. 파나마에 대하여, 자국 주권하의 육지, 해양 및 상공, 그리고 자국이 국제법과 그 국내법에 따라 주권적 권리 및 관할권을 행사하는 배타적 경제수역 및 대륙붕